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헌 법	응시번호	성 명
-----	------	-----

〈제 1 문〉

서울 A구에서 알코올분 13도의 ‘서초하’ 라는 술을 제조 및 판매하는 甲은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고액의 광고비를 들여 인기 가수가 등장하는 광고물을 제작한 후 A구의 구청장 乙에게 옥외광고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분류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1)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하고 있음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甲은 乙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甲은 소송 계속 중 위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위 취소소송은 적법하게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함) (10점)
2. 甲이 제한받는 기본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경합 상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15점)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5점)
4. 만약 甲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주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청구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그러한 형식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참조조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 2 문

〈제2문의 1〉

군복무 중인 남성 甲은 남성인 후임병 乙에 대하여 성적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甲은 乙과 함께 외박을 나가 부대 인근 여관에서 乙과 합의 하에 항문성교를 하였다. 이후 이러한 사실들이 발각되어 甲은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군인 간의 항문성교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군 제○사단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

1. 甲은 위 「군형법」 조항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헌법적으로 타당한가? (15점)
2. 甲은 위 「군형법」 조항이 남성 간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헌법적으로 타당한가? (15점)

〈제2문의 2〉

88세의 甲은 2년간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으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투여·인공영양공급·수액공급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甲은 죽음에 임박할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스스로 직접 작성하여 이미 3년 전에 병원에 제출한 바 있다.

甲의 죽을 권리의 헌법적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및 범위를 논하시오. (10점)

〈제2문의 3〉

대한민국 국민인 甲은 1999. 3. 8.생인 자이다. 甲은 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7. 6. 28.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 가능 연령을 규정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 위 국회의원 선거일은 가상으로 설정된 것임.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